



1. 특허침해의 죄

45

-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등)**
 -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특허권의 침해라 함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있거나(실시권의 존재)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예컨대, 시험, 연구 등을 위한 실시)에는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경우(예컨대, 가정에서의 사용 등) 및 실시행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특허품의 수출, 단순한 소지 등)도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고의범, 친고죄, 몰수규정의 적용(특허법 제231조 제1항)

2. 거짓행위의 죄

46

- **특허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결의 과정에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 또는 심결을 받는 것과 같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임
- 심사 또는 심판의 과정에서 **허위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을 착오에 빠뜨려 특허요건을 결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심결을 받는 행위를 의미
- 비친고죄

3. 특허법 제230조: 양벌규정

47

- 특허법은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또는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침해, 허위표시 및 사위행위의 죄를 범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그 법인에 대하여는 3억원 이하(특허법 제225조 제1항) 또는 6천만원 이하 (특허법 제228조, 제229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있음

4.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제재

48

- 형사적 제재
 -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특허법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하는 경우 : 무고죄
 - 특허침해(혐의)자 이외에 발주처, 관공서, 관련 업계 단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 특허침해(혐의)자에 대한 업무방해, 신용훼손죄
- 행정적(공정거래위원회)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 명령, 검찰 고발, 과태료 납부명령
- 민사적 제재
 - 부당 가처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5. 업무방해죄 등

- 특허침해자 이외에 발주처, 관공서, 관련 업계 단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되는가?
 - : 심결, 판결 등을 통해 “특허침해”가 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판단 하에 특허침해 주장하며 발송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신용훼손죄 될 수 있음
 - : 특허권자의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
- 〈춘천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0고단382 판결〉
- [범죄사실] : 피고인 甲은, ‘일본교류사업 참가업체로 선정된 乙이 甲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참가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에 발송
- [판결] “(피고인이)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제품의 의장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장법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인이 가지는 특허권, 의장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저지하려는 자구책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경쟁회사의 일본진출을 방해하려는 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판단 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형사사건 절차의 개요

50

① 수사의 개시

-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
- 수사의 단서 : 고소, 고발, 인지, 자수, 진정 등

② 수사기관의 수사 및 수사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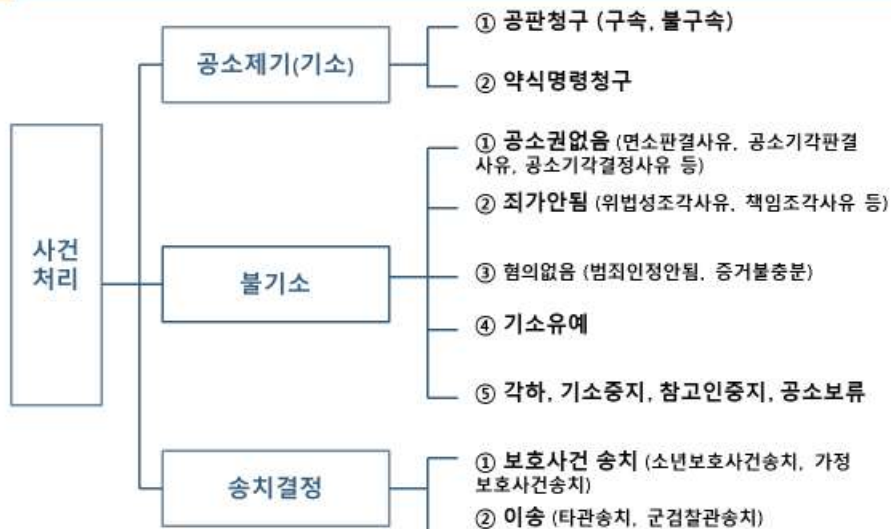
- 경찰, 검찰 (수사지휘, 기소여부 결정)
- 검사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함.

③ 검찰의 공소제기

④ 공판절차

7. 형사 사건처리의 태양

51



8. 고소·고발, 진정사건 조사 흐름도

52



9. 고소·고발, 진정사건 조사 흐름도

53



변리사 22년/변호사 14년 경력, 특허심판소송, 손해배상, 형사소송,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